

예비심사 안건

의안번호	제2013 - 호
의결 연월일	2013. 10 . (제 회)

의 결  
사 항

「중소기업사업조정시행세칙」 제정(안)  
**신 설·강 화 규 제 심 사 안**

제 안 자	중소기업청장 한정화
제출년월일	2013. 10. .

# 목 차

I. 규제 심사(안) 개요 .....	1
□ 요 약 .....	1
□ 제도(개정안) 개요 .....	2
II. 규제심사안 .....	3
◦ 일시정지 권고 이행명령(시행세칙) .....	9

# I. 규제심사안 개요

## □ 요약

규제 사무명	현행 규제내용	변경(또는 신설) 규제내용
○ 일시정지 권고이행 명령	○ <신설>	<p>○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·개시·확장을 일시정지 권고, 공표후에도 불이행시 조정심의회 의결을 거쳐 일시정지 권고 이행을 명할 수 있음</p> <p>⇒(사유)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·개시·확장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, 공표에 그치고 있으나, 이행력 확보를 위해 일시정지 이행 명령제 도입</p> <p>* (상생법 개정 내용) 중기청장은 대기업등에 일시정지 권고 불이행에 대한 공표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불이행시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음</p>

## □ 제도(개정안) 개요

### (도입배경)

-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·개시·확장에 대해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때 까지 일시정지 권고, 공표할 수 있으나, 불이행시 이에 대한 이행력 확보방안이 없음

### (추진방안)

- 중소기업청장은 일시정지 불이행 사실을 공표한 후 심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여 일시정지 이행명령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하며, 이행명령을 심의의결한 경우 신속하게 일시정지 명령을 하도록 함

\* 상생법 제34조제3항(‘13.8.6 공포) 인용

### (주요내용)

- (시행세칙) 일시정지 이행명령
  - 중기청장은 불이행 사실 공표후 심의회를 신속하게 개최
  - 일시정지 이행명령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
  -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심의·의결한 경우 신속하게 일시정지 명령
  - 일시정지 이행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

## II. 규제심사안

### 1.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- 중소기업청장은 일시정지 불이행 사실을 공표한 후 심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여 일시정지 이행명령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하며, 이행명령을 심의의결한 경우 신속하게 일시정지 명령을 하도록 함

⇒ (사유)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·개시·확장에 대해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때까지 일시정지 권고, 공표를 할 수 있으나, 불이행시 이에 대한 이행력 확보방안이 없음

#### <조문 대비표>

개 정 전	개 정 후
<신설>	<p><b>제21조(일시정지 이행명령)</b> ① 중소기업청장(또는 시·도지사)은 제20조에 따라 일시정지 불이행 사실을 공표한 후 심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여 일시정지 이행명령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중소기업청장(또는 시·도지사)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에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심의의결한 경우 해당 대기업 등에 신속하게 사업의</p>

개 정 전	개 정 후
	<p>일시정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대기업 등이 제2항에 따른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</p>

## 2] 규제영향분석서

### 【분석대상 규제의 개요】

1.규제사무명등	등록번호	미등록		구분								
	등록단위	주규제	부수규제	신설	○	강화		내용심사		존속기한연장		
			○									
	일시정지 권고 이행명령			경계적 규제	○	사회적 규제				행정적 규제		
2.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과</li> <li>소상공인정책국장 김형영,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인섭(042-481-4408)</li> </ul>											
3. 근거법령명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·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</li> </ul>											
4. 피규제 집 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의견수렴 방식				의견내용					
	피규제자	대기업 등		입법예고 (10.17~11.6)				없음				
	이해관계자	중소기업단체(중소기업)		입법예고 (10.17~11.6)				없음				
	관련 부처	해당없음		해당없음				없음				
5.규제존속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『대·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』에 일시정지 이행명령의 구체적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, 또한 관련 법률이</li> </ul>											

	한시법이 아니므로 별도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없음						
6. 종전규제 및 신설(강화) 규제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강화 규제 내용</li> <li>○ 중소기업청장은 일시정지 불이행 사실을 공표한 후 심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여 일시정지 이행명령 여부에 대해 심의·의결하며, 이행명령을 심의·의결한 경우 신속하게 일시정지 명령을 하도록 함</li> <li>- 일시정지 이행명령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징수</li> <li>* 상생법 개정 일시정지 이행명령 근거조항 신설('13.8.6 공포)</li> </ul>						
7. 규제체제도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border: none;">일시정지 권고, 공표</td> <td style="border: none;">➔</td> <td style="border: none;">일시정지 이행명령 (심의회 의결)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: none;">중소기업청장 → 대기업 등</td> <td style="border: none;"></td> <td style="border: none;">중소기업청장 → 대기업 등</td> </tr> </table>	일시정지 권고, 공표	➔	일시정지 이행명령 (심의회 의결)	중소기업청장 → 대기업 등		중소기업청장 → 대기업 등
일시정지 권고, 공표	➔	일시정지 이행명령 (심의회 의결)					
중소기업청장 → 대기업 등		중소기업청장 → 대기업 등					

### 【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】

#### (1) 규제의 필요성

##### (1-1) 문제 정의

-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·개시·확장에 대해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시정지 권고, 공표를 할 수 있으나, 불이행시 이에 대한 이행력 확보방안이 없어 이행력 제고를 위한 상생법 개정 완료

※ 상생법 제34조제3항 신설('13.8.6 공포)

##### (1-2) 규제의 신설·강화 필요성

###### (정부 개입의 필요성)

-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·개시·확장에 따른 일시정지 권고(공표)를 할 수 있으나,
  - 불이행시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가 부재하여 일시정지 이

행명령제를 도입하고 이행명령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

(해외 사례) 없음

## (2)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### (2-1) 규제 대안 검토

- 대기업등이 일시정지 권고에 따르지 따르지 않는 경우 공표할 수 있으나, 공표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
- 일시정지 이행명령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적절한 행정 지도에 해당(규제 대안 없음)

### (2-2) 비용·편익 분석

- (비용) 대기업이 사업 인수·개시·확장에 대한 일시정지 이행명령으로 추가비용이 수반되지 않음.
- (편익)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에 대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영역 보호의 행정조치 효과 등의 편익 발생

### (2-3)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

- (과도한 규제비용 유발 여부) 대기업에 대한 행정조치로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부담 발생요인이 없음
- (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집행가능 또는 필요한 규제방식 여부) 일시정지 이행명령은 대기업의 일시정지 권고 불이행에 대한 이행 강제 수단으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



### (3) 규제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

#### (3-1) 규제의 적정성

-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조치로 적정한 수준에 해당

#### (3-2) 이해관계자 협의

-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('13.10.17~11.6) 결과 중견기업연합회는 일시정지 권고·공표·이행명령 등 일시정지 제도 불필요 의견 제출(대기업의 사업활동을 전면중지하는 지나친 규제)

#### (3-3) 규제집행의 실효성

- 동 시행세칙에서 일시정지 권고요건, 적용범위, 위반시 공표, 이행명령, 이행명령 철회 등 진행 단계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이행명령의 실효성 확보 가능